

# 기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 제415-352	(전화번호 75-6593)	전 결 규정 조 항 전 결 사항
처리기간	제 2 부 1 시 장		
작성일자			
보존년한			
보조기관	도시계획국장	협 법 부 담당 관 (모 시 안 심 시 시 원 과 장 조 중 합 한 계 획 계 장	
	도시계획과장		
	지역계획계장		
기안책임자	권 완	75. 3. 11.	조
경 유 수 관 함	각 안 참 조	발 실	시 장
계 목	서울도시계획 용도지역지적승인		
제1안	내부 결재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도시제(안)호</span>		
1. 당시관내 <del>도봉구 마약동 42번지 일대, 중계동 마약동 549번지 일대, 상북구 월곡동 534번지 일대, 동대문구 건동동, 답십리동 295번지 일대</del> 중구 동작동, 용산구 갈원동, <del>서청동, 문배동</del> , 한강로 1, 2, 3 가 원료로 1, 2, 3 가 일부지역에 대하여 건설부고시 제198호(71.4.7)로 용도지역 일부 변경 결정코시된 도시계획용도 지역중 상업지역에 대하여 71.4.7. 이전 지형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현재 심의 완료 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의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지적승인하고 별안과같이 시행코지 하오니			
가. 도시계획 용도 지역지적승인 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del>상업지역</del>	<del>도봉구 마약동 42번지 일대 일부 지역</del>	<del>46,250</del>	
"	<del>도봉구 중계동, 하계동 일부 지역</del>	<del>64,800</del>	

상업지역	상복구월곡동 534번지 일대 일부 지역	187,388
"	동대문구 전농동, 답십리동 295번지 일대 일부 지역	58,560
"	중구 동작동, 용산구 갈월동, <del>효창동</del> , 문배동, 한강로1,2,3가, 원효로1,2,3가 일부 지역	1,293,350

첨부. 지적승인조서 1부. 끝.

제2안 고시안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1975. 4. 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결  
 1975. 4. 11

서울 도시계획 용도지역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198호(71.4.7)로 일부 변경결정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첨부 1. 도면생략

2. 지적승인조서(도면표시와 같음)

1975. 3.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지적승인조서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del>상업지역</del>	<del>상복구월곡동 534번지 일대 일부 지역</del>	46,250 m <sup>2</sup>	
<del>"</del>	<del>동대문구 중계동, 학계동 일부 지역</del>	64,800 u	
<del>"</del>	<del>상복구월곡동 534번지 일대 일부 지역</del>	187,388 u	
<del>"</del>	<del>동대문구 전농동, 답십리동 295번지 일대 일부 지역</del>	58,560, u	
	중구 동작동, 용산구 갈월동, <del>효창동</del>	1,293,350 u	

문 백동, 한강로1,2,3 가 원효로1,2,3 가	
일부 지역	
*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제3안	
수신 건설부장관	발신 시장
제목 등 건	
1. 건설부고시 제798호 (71.4.7)로 일부변경 결정고시된 당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중 상업지역일부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3조와 건설부고시 제123호 (73.4.4)에 따라 별첨고시문 사본및 도면표시와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및 관계도면 각1부.	
제2안	
수신 수신차장	
제목 등 건	
1. 당시관내 도용구, 미아동, 중계동, 학계동 일부지역. 성북구 월곡동, 동대문구전농동, 답십리동, 중구동자동. 용산구 갈월동, 효창동 문 백동, 한강로1,2,3가 원효로1,2,3 가 일부지역이 건설부고시 제798호 (71.4.7)로 변경 결정 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3조의규정과 건설부고시 제123호 (73.4.4)에 따라 별첨고시문 사본및 도면표시와같이 지적승인 하였으니	
2. 관계도서는 귀청(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일것이며 본지역 유지관리와 제반업무및 건축대지증명 발급에 단전을 기하기바람.	
수신처: <del>동북구청장, 성북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중구청장, 용산구청장</del>	
첨부. 고시문사본및 관계도면 각1부. 끝.	